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4329
등록일자	2016.3.21.
결재일자	2016.3.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정지연	이미화	박진철	주윤중	03/22 신연희
협조자	행정국장 감사팀장	이창훈 이준택		

-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

소극적 행정 처분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 계획

요 목

□ [인사혁신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주요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 : 2016. 3. 7. ~ 4. 18.
- 개정 주요내용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기준 마련 : 최고 파면
 - 적극행정 징계감경 확대 및 소극행정 징계감경 제한

○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제정중

- 징계사유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규정

□ 우리구 대응계획

- 관련 내용 대내·외 홍보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면책 사례 및 소극행정 처분 사례 쏠 직원에게 전파
-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직원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강 남 구
(감 사 담 당 관)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16. 3. 14. / '16. 3. 21.) 																											
추진 경위	○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 추진함에 따라 관련내용 전파																											
예산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 해당없음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 례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 해당사항 없음																											

소극적 행정 처분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 계획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기준을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주요 사례를 대내·외에 전파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I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 現 입법예고중 : '16. 3. 7 ~ 4. 18.

□ 주요 개정내용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¹⁾ 징계기준 마련 : 최고 파면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및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 규정 마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현행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개정(안)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 편의 / 업무해태 / 탁상행정 / 기타 관중심의 행정 (출처:2015 감사원 사례집)

○ 적극행정 징계감경 확대 및 소극행정 징계감경 제한

-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
 - (현행)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개정)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 징계감경 불가

II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제정(안)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제정 추진

- 소극행정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 조치
- 경고·주의 처분의 효력에 대한 기준 제시 : 징계 > 경고 > 주의
 -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평정·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등에 불이익 조치
 -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1년 이내에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 요구

III 대 응 계 획

□ 관련내용 전파

- 소극행정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관련 주요내용 전파(대외홍보)
 -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 내용 게시 및 배너 등록
 - ※ 게시기간 : '16. 3. 21. ~ 4. 18.(입법예고 기간중)

(대내홍보)

- 확대간부회의 시 보고 시행 ('16. 3. 21. 기사행)
- 서울행정포털 공지사항 내용 게시 및 전부서 공문 시행
- 인사혁신처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청렴게시판에 등록

□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주요사례 전파**

-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례 제시

※ 관련 주요사례 : [붙임 1]

□ **자체감사 시, 직원 모범사례를 필수 발굴하여 직원 사기 진작 도모**

-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 적극행정 모범사례 전파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後

IV 협 조 사 항

- **소극행정 징계 처분 강화 내용 숙지** ----- [전 직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홈페이지 배너 등록 -- [전산정보과]

[붙임 1] 관련 주요사례

[붙임 2] (인사혁신처) 2015.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집(첨부). 끝.

[붙임 1] 관련 주요사례

☐ **적극행정 면책 사례**

■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1) ○○시에서는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개월 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

⇒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심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었고, 관내에 쓰레기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해당업체 밖에 없었으며 이웃 지역의 업체는 운반거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기피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업체와 계약하였기에 면책이 인정됨(징계를 주의로 감경)

2) ○○청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그 중 71억여 원을 한의원, 숙박업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명목으로 용자를 허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취지를 훼손함.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고소득자,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용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당시 국가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민간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음

또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자금을 시급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부기준이 미비한 가운데 발생한 사안으로 전체 용자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결과적으로 용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청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이 인정됨(주의를 불문으로 면책)

□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도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인가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가 등을 통보받은 3개 사업에 대해 2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1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이에 ○○도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이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등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농지전용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을 이유로 면책을 신청

⇒ 이 건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에 가까움. 또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으며,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단순히 부담금 부과를 방치한 것으로 면책 불인정(주의)

2) ○○공사에서는 △△지역에 대한 공급방식 변경사업(총사업비 1,558억여 원)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관련자들은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신청함.

⇒ 법령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 불인정(주의)

□ 소극행정 사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

- 1) 공무원 A씨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및 국토교통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에 따른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야 인·허가 민원 다수 건에 대해 타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
이에 소속기관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관련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
- 2) 또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처리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후에야 '보완요구'하는 등 다수의 인허가 처리 지연을 초래
이에 소속기관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관련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
- 3)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일단은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는 나누어서 납부하기로 함.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세금을 다 납부하였는데도 2년 2개월 동안이나 담보를 해제해주지 않았음
이에 감사원에서는 2011. 1. 1.부터 2013. 11. 15.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납 처리한 104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1건에 대한 담보를 최종 납부일로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동안부터 짧게는 1개월 동안까지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 조치요구
- 4) C씨는 동물용 탈취제를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부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함. 그런데 ○○본부 담당자는 부수적인 서류를 이유로 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신고서 접수를 거부하였음

C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인데,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자금을 회수당할 위기에 빠짐

감사원 감사결과, 약사법 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신고서를 ○○본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로 되어 있었으나,

담당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신고서류를 60여 일 동안 접수조차 하지 않았음. 그 후 C씨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가 시작되자 ○○본부 담당자는 9일여 만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증을 발급함.